



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

2024.12.26

1.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관련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됨

법원이 최근 제조업 공장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중 공구에 맞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,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.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. 12. 19.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A사(도급인) 및 A사의 대표이사B,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개인사업자C(수급인) 및 C의 근로자D에게 **모두 무죄를 선고**하였습니다.

2022. 2. 9. 대구 소재 A사 공장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에 압축성형기에서 튕겨나온 플라스틱 수공구(일명 지그, 이하 ‘이 사건 수공구’)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한 달 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.

검사는 (i) 사업주 C가 소속 근로자인 D가 이 사건 공구를 제조 목적과 달리 사용함에도 이를 방치하고, 압축성형기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(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, 업무상과실치사죄), (ii) C 소속 근로자인 D에게 이 사건 수공구를 제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압축성형기 내부에 이 사건 수공구를 올려둔 채로 기계를 작동시킨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점(업무상과실치사죄), (iii) A사의 대표이사 B가 도급인으로서 위 (i)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(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)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.

이에 대하여 법원은 ① 이 사건 수공구의 제조 당시 제조 목적이 불분명하여 D가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B, C가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, ② 압축성형기 작업 과정에 이 사건 수공구가 튕겨 나올 것은 예상하기 어려워 압축성형기 방호장치 설치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았고(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무죄), C, D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(업무상과실치사죄 무죄). 특히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, A사 대표이사 B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전담조직을 두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,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전담조직 미배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(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무죄).

2. 이번 선고의 시사점

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~9호까지의 사항들을,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~2호의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형법 제17조는 “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바,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이행사항들이 미비한 것이 아니라, 미비한 의무이행사항과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중대산업재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.

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도 예외 없이 **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(원인)과 중대산업재해 발생(결과)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죄책이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**로서 의의가 있습니다.

즉, 법원은 B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소정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전담 조직을 두지 않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, 이 사건 사고가 전담조직 미배치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B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.

또한 대상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작업 및 관련 공정의 내용, 압축성형기의 작동 방식, 이 사건 수공구의 제조 목적, 평상시 작업방식 및 작업교육 내용, 이 사건 수공구의 재질 및 특성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는 ‘예견가능성’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데, 이는 피고인들에게 관련 법령상의 조치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.

따라서,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련 법령의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해서는 안 되고, 먼저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이 예견 가능한지, 관련 법령위반과 **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**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사고 직후 현장조사, 수사단계에서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고용노동부경찰검찰 수사 대응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.

관련구성원

진현일

변호사

02-316-2897

hijin@shinkim.com

김태승

변호사

02-316-1771

tskim@shinkim.com

정해윤

변호사

02-316-1844

hyoojung@shinkim.com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